

자영업자 시간 빈곤과 제도적 검토사항*

김 근 주**

I. 머리말

시간 문제에 관한 정책적 접근법은 취업자의 고용상 지위, 즉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법적 규율에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스스로의 시간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시간 활용에 관한 특별한 정책적 접근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 정부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하나의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¹⁾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근로자’에 관한 것으로,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정책의 범주에서 빠져 있게 된다. 다만 사업장에 일반적인 노동시간 규율이 있는 경우, 사용자인 자영업자 역시 이를 감안하여 사업을 운영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특히 종업원이 없는 경우나 종업원이 있다 하더라도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규율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생존과 빈곤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²⁾ 높은 자영업자 비율은 근로자의 고용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근로관계 종료 후 자영업자로 전환),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운(청년 자영업자 증가) 노동시

* 이 글은 이경희·김근주(2018), 『시간 빈곤(Time-Poor)에 관한 연구』, 제4장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keunju@kli.re.kr).

1) 일반적으로 ‘근로시간’과 ‘노동시간’ 등은 동일한 의미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노동’과 ‘근로’를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지만, 제도적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이 장의 목적상 실정법상의 용어를 중심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을 사용하며, ‘일하는 시간’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시간을 사용한다.

2) 통계청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기준으로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5.4%로 나타나고 있다.

장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와 경직된 고용관계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시간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영업자라는 점도 그 선택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근로시간의 법적 규율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필수적인 휴식을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을 위하여 시간을 희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업무의 위탁 내지 도급의 방식으로 일하는 운송업 등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사실상 없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에 관한 시간 빈곤 실태를 바탕으로 한 자영업자 시간 규율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I. 자영업자 시간 빈곤의 현황

1.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

전통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규율은 자영업자의 저소득이나 소득상실과 같은 문제에 집중되어 왔는데, 그 보호 방식에 있어서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에서는 자영업자를 임의가입의 대상으로 하면서, 보험료를 전적으로 자영업자가 부담하게 한다. 이러한 원칙은 고용보험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회보험상 일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³⁾

‘자영업자’라는 개념이 근로자에 대비되는 것이라면,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영세성을 근거로 세법상의 혜택이나 과세방식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 단위로 전문화된 조세대응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납세 의무를 단순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자영업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영세한 자들을 ‘소상공인’으로 범주화한 후, 이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은 2000년 제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 방안들을 보완한 것이다.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이란 ① 광업·제조업·건설업·운

3)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비용의 부담)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수업에서 10인 미만, ② 그 밖의 업종에서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의미한다(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① 소상공인 창업 지원(제8조), ②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등 지원(제9조), ③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제10조), ④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제11조), 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12조), ⑥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제12조의2), ⑦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제12조의3), ⑧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13조), ⑨ 조세의 감면(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원하청 구조하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인 성격의 자영업자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사레센터의 설치·운영(제15조)’에 관한 사항과 집단적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의 결성(제16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⁷⁾

이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영업 지원과 연계되어 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계약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적 신분’에 따른 열위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포괄적인 ‘일할 의무’에 의하여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물론 생명·안전까지 위협받을 위험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자영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영업의 재량성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근로자보다 낮게 된다.

2. 자영업자 시간 빈곤 실태와 문제점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원칙(제

- 4) 이 외에도 소상공인에 관한 법령 중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적합업종을 지정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이 법은 2018년 6월 12일 제정되었으며, 2018년 12월 13일 시행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7) 최근에는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하거나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 등 자영업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도 모색되고 있다.

50조), 가산임금(제56조), 연차휴가(제60조 등), 생리휴가(제7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들은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장에 있어서 일반적인 노동시간 규율이 있는 경우, 사용자인 자영업자 역시 이를 감안하여 사업을 운영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장 차원의 시간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의 시간 빈곤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비취업자 대비 취업자의 시간 빈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취업자 중에서는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시간 빈곤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2018년 시간 빈곤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집단은 ‘전적으로 내가 근무시간을 결정함’이 55.5%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 상황이나 의사에 따라 출퇴근 시간 변경이 ‘허용된다’는 응답률은 90.9%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업무 시간 중 일정 시간을 개인 일이나 가정사를 돌보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대체로 가능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1.1%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자영업자가 근로자에 비하여 시간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기존의 주장(자영업자의 시간주권이 근로자에 비하여 높다)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 휴무일을 두고 일 단위의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14.5%이며, 이러한 경향은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휴무일을 두는 경우에도 비정기적인 휴무를 하는 경우가 29.7%로 나타났으며, 정기휴무일을 갖는 자영업자도 매주 1회(58.7%)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 2일의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에 미치지 못한다.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근로시간의 법적 규율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필수적인 휴식을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을 위하여 시간을 희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경우, 자영업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시간주권이 제약받게 되는데,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확인되었다. 프랜차이즈 업종에서의 근무일·출퇴근시간 선택권은 타 자영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로 업무의 위탁 내지 도급의 방식으로 일하는 운송업의 경우에도,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시간 활용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⁸⁾

8) 다만 운송업의 경우,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있어서도 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연장근로 제한 예외 및 휴게시간 변경)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의업”

III. 자영업자 시간 빈곤 해소 정책

1. 일하는 문화의 규범화

각 국가마다 역사적·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온 일하는 문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하는 문화는 각기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아 왔으며, 현재에도 특정한 업종을 제외한다면 필요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예배를 올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을 공휴일로 쉬고 있으며, 이스라엘 역시 안식일(Shabbat)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일반 상점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교적 이유에 의한 휴무일들은 자영업자의 정기적인 휴식(근로자의 주휴일)으로 작용한다. 한편 기독교 문화에서는 특정한 기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데,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연시에는 휴업하거나 일찍 영업을 마감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의 영업일 규제는 주로 상점 영업시간을 문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가 상점 영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화적인 규제는 자영업자 전체는 물론, 일하는 방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법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독일의 영업법(Gewerbeordnung)을 비롯하여, 상점의 거래시간을 규율하는 법체계가 존재하여 왔다. 호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법적인 거래시간을 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호주에서는 1970년대부터 각 주별로 표준거래시간(standard trading hours)을 정하고, 이를 통하여 자영업자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통상적인 영업시간을 명확하게 인지시킴으로써 휴식 있는 삶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입법된 남호주(South Australia)의 1977년 상점영업시간에 관한 법(Shop Trading Hours Act 1977)은 관광지 등 장기 영업지구와 자동차 렌트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표준 영업시간을 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상점이 이를 준수하도록 제도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남호주의 사례에서 나타난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 방식은 기존의 관행들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일 뿐, 법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영업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한편 영업시간에 관한 사회적 합의 또는 관행이 존재하는 국가들에서도, 이를 법령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남호주 : 1977년 상점영업시간에 관한 법

제13조(영업 가능 시간)

(1) 본 조항이 정하는 범위에서, 애들레이드 광역쇼핑구역(Greater Adelaide Shopping District)에 위치한 가게를 운영하는 자는 이하에서 정하는 시간에 따라 영업할 수 있다-

- (a) 평일 오후 9시까지;
- (b) 토요일 오후 5시까지;
- (c)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본 조항이 정하는 범위에서, CBD 관광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Tourist Precinct)에 위치한 가게를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영업 가능 시간에 더하여,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5) 본 조항이 정하는 범위에서, 애들레이드 광역쇼핑구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가게를 운영하는 자는 이하에서 정하는 시간에 따라 영업할 수 있다-

- (a) 목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6시까지;
- (b) 목요일 오후 9시까지;
- (c) 토요일 오후 5시까지.

(5aa) 본 조항이 정하는 범위에서, 쇼핑지구에 위치한 가게를 운영하는 자는 부분 공휴일(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이 평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을 공휴일로 간주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다.

(중략)

제13A조(일요일 영업과 관련한 제한 사항)

(1) 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쇼핑지구에 위치한 가게에 대한 상가 임대 계약 또는 담보 계약상의 조건이 해당 상점이 일요일에 영업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그와 같은 요건의 범위에서 무효인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항은 1936년 임대인및임차인법(Landlord and Tenant Act 1936) 또는 1995년 상가임대및상업용리스법(Retail and Commercial Leases Act 1995)에 의거하여 면제의 승인을 받은 상가 임대 계약 또는 담보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쇼핑지구에 위치한 상점에 고용된 자는 일요일에 근로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단, 해당인이 특정한 일요일에 근로할 것을 점주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점차 사라지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상점 영업시간 규제는 단순히 자영업자의 시간 빈곤 차원의 논의를 넘는 것으로, 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영업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일반상점의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에 관해서 단언하긴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역동적인 사회’를 추구하여 온 흐름을 감안할 때,

9) 최근 유럽 국가들 중 크로아티아(2008)와 핀란드(2015)는 영업시간에 관한 법적 규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2006년 독일 역시 연방법인 영업시간제한법(Ladenschlussgesetz)으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 나서, 영업시간 규율을 주 자치권으로 이양하였다.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정책적 접근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방식과는 별도로, 현재 자영업자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영업시간을 강제하고 있는 계약들이 불공정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지, 장시간 영업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건강 침해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는 개별적 접근방식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각 업종별 표준업무 행태를 검토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영업시간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나홀로 자영업자의 시간 빈곤 : 위장 자영업자 문제

최근의 자영업자의 전체 규모와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나홀로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이러한 경향은 자영업 시장의 포화에서 자영업이 살아남기 위한 ‘틈새 + 차별화’ 전략으로 설명되기도 한다.¹¹⁾ 하지만 자영업 시장의 포화는 무한 경쟁을 발생시키고, 그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희생되는 것은 ‘시간’이다. 저숙련 자영업의 과잉은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하는 ‘숙련의 표준화’ 또는 종속적 자영업자에게서 나타나는 ‘일하는 방식의 매뉴얼화’에 의지하게 된다. 기존의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왔던 일들이 기술의 발달과 인적 아웃소싱 전략으로 인하여 자영업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후자의 문제는 주로 노동법의 영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¹²⁾’의 법적 지위로 검토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전통적인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업 운영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율권을 갖는 자영업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회색지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원칙적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있어서 근로자와 유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 필요성이 더 큰 경우도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근로관계가 아닌 것처럼 하는 위장된 근로관계(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라고 보는 반면, 영업 및 계약

10) 2017년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3만 명 수준으로, 지난 3년간 평균이 대략 560만 명 수준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규모상의 변동은 크지 않다. 다만 전체 자영업자 중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11) 허건·박성재·방수준·손정일·이상연·안형수(2018), 『자영업 트렌드 2018』, 미래의 창, p.4.

12)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특례 적용 대상인 9개 업종의 자영업자에 국한한 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학계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용되어 오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가 2002년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2008년 12월 14일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적 지위를 지닌 자’라는 의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례 업종을 지칭하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전자의 의미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의 자유를 중시하는 견해들에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적 지위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유형의 계약이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 지위는 독자적인 논의 주제라고 할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통하여 ① 보험설계사, ②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③ 학습지 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배송 업무자,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 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포섭하고 있다.¹³⁾ 그리고 2019년 1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등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 빈곤과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적용 가능한 방안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표준계약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적 거래 규범 확립을 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¹⁴⁾ 이 외에도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 24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2011. 12. 30, 2015. 4. 14, 2016. 3. 22] [시행일 2016. 7. 1]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2011. 1. 24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다. 삭제 [2015. 4. 14]

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성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중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과 같이 업종을 전체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법령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여 담당 부처에서 고시로 정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관한 필자의 2015년 연구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공연예술]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업무위탁)계약서’, ‘[공연예술] 공연예술 출연 표준계약서 및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표준계약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등을 분석한 바 있다.¹⁵⁾ 다만 이러한 표준계약서 가운데 노동시간에 관한 것은 ‘건설기계임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건설기계 가동시간(제3조 : 1일 8시간, 월 200시간이 기준)이 유일했는데, 사실 건설기계 가동시간이 순수한 노동시간 규율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임차기계의 관리라는 측면도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노동시간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규율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2019년 1월에 다시 확인한 결과, 여전히 변화 없다.

표준계약서가 ‘일하는 방식의 매뉴얼화’와 함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제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동시간 또는 휴식에 관한 사항을 표준계약서에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V. 맺음말

전통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규율은, 자영업자의 저소득이나 소득상실과 같은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자영업자의 시간 빈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점 영업시간 규제를 통하여 자영업자의 일하는 시간을 규율하고자 하는 접근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점 영업시간 규제는 단순히 자영업자의 시간 빈곤 차원의 논의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환경과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책적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3.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이하 생략)

15) 김기선·정흥준·김근주(2015), 『공정계약을 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연구보고서.

접근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자영업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한 가맹점 운영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관행과 장시간 운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건강상 피해를 막기 위하여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보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나홀로 자영업자’ 문제,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종속적 자영업자 문제이다. 시간 빈곤과 관련하여,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적용 가능한 방안은 표준계약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표준계약서에는 노동시간이나 휴식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표준계약서는 ‘일하는 방식의 매뉴얼화’와 함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제시이므로, 노동시간 또는 휴식에 관한 사항을 표준계약서에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KLI](#)

[참고문헌]

- 김근주(2018), 「청년여성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고용노사관계 추계학술토론회 『생애주기로 본 여성노동 이슈와 해법』 토론문.
- _____ (2015),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15), 「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에 관한 비판적 검토」, 『노동법연구』 39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김기선·정홍준·김근주(2015), 『공정계약을 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연구보고서.
- 김유선(2018),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 대응」,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2018 서울 세계대회 발표문.
- 노호창(2014),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의 검토」, 『노동법학』 제51호, 한국노동법학회.
- 이정희·김근주·정경은·이주호·구은희(2017),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평향평가시리즈.
- 허건·박성채·방수준·손정일·이상엽·안형수(2018), 『자영업 트렌드 2018』, 미래의 창.
- ILO(2005), “Hours of Work: From fixed to flexibl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93rd Session.